

산학교육지원센터 규정(안)

□ 제정: 2016. 1. 1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산학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고 한다)는 산업 수요 지향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, 나아가 산학 연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취업 및 창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산학교육과정 분석 개발, 현장중심 교수법 지원
2. 산학협동, 설계교육 연구 및 지원
3. 산학교육 지원 관련 DB구축
4. 현장실습/인턴쉽 수요조사, 유치, 관리 및 실습비 지원
5. 캡스톤설계 실습실 구축 및 경비 지원
6. 산학교육 설문 피드백 및 주기적 개선 방안 도출

제2장 조 직

제3조 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 (위원) ① 위원은 센터의 연구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

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,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 (간사) ① 센터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센터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며,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전임연구원) ① 센터에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조교)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의 조교 임용 규정에 따른다.

③ 조교는 센터장과 간사의 지시를 받아 위원의 활동을 보좌한다.

제8조(산학교육혁신위원회) ① 산학교육위원회는 센터장, 공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각 학과당

최소 1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산학교육혁신위원회는 제2조의 사업들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산학교육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운영위원은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
2. 센터의 예산편성과 결산
3. 연구과제 배정
4. 참여 학생 관리 등 기타 주요사항

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본 규정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1조(운영경비) 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
1.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
2. 학교 보조금
3. 기타

제12조(연구비 및 제반경비) 센터의 연구비와 제반경비에 대한 사항은 수원대학교의 제규정에

따라 처리한다.

제13조 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수원대학교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